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도시계획과)

의안번호	제 361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4. 11. .)
의안명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3. 제도연혁

- 2000. 1. 28.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도 도입(도시계획법)

매수청구제 - 결정 후 10년 이내 시행되지 않는 시설의 지목상대지[塲] 소유자는 매수청구 가능
자동실효제 - 미집행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상실

- 2011. 4.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제도 도입(국토계획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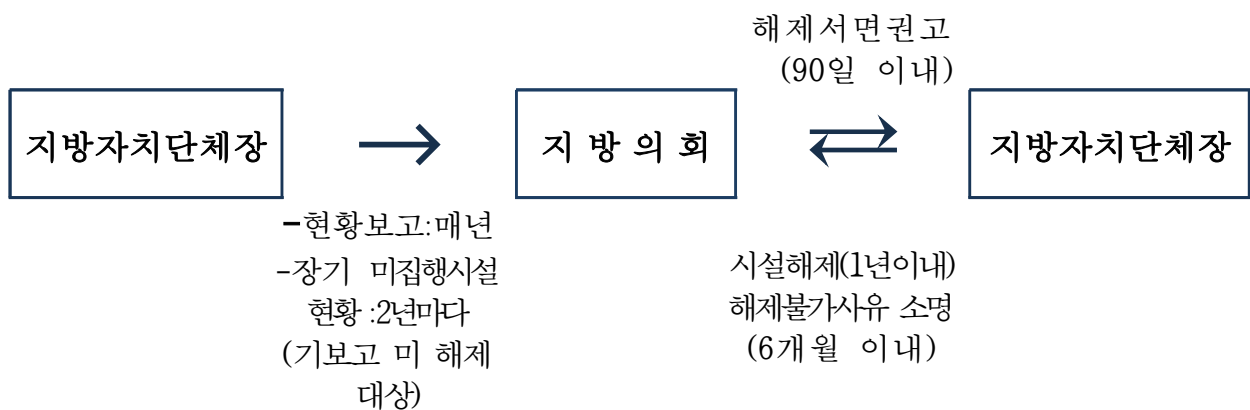
지방의회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 가능

- 2012. 11. 1. 자치구 관리 시설은 자치구가 의회에 보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2017. 9. 20.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청취제도 도입(국토계획법)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의견청취

4.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



5. 의견 청취 대상

- 단계별집행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계획

6. 의회 보고 대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7. 성북구의회 의견 청취 및 보고 목록

○ 의견 청취 대상 : 6건

○ 의회 보고 대상 : 5건

8.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²⁾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 4. 10., 2014. 11. 11., 2021. 12. 16.>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³⁾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됨.
-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제42조제3,4항)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

3)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4)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4. 10., 2014. 11. 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 4. 10.>

- 또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85조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⁶⁾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6건이며, 보고 대상은 5건 도로로 주요내용은,
 - 정릉동 138-13 ~ 966-329, 장위동 55-25 ~ 55-21, 상월곡동 75-54 ~ 하월곡동 20, 하월곡동18-49 ~ 상월곡동 28-45, 성북동 246~303, 정릉동 147-4 ~ 484-1임.
- 본 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그 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로 검토되었음.

5)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7. 12. 26.>

6)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7. 9. 19.>